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38
------	-----

2009년 2월 25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안자: 정춘희 의원 외 9인
- 제안일: 2009. 1. 21.
- 회부일: 2009. 1. 29.

2. 제안설명 요지

「서울특별시의회 일본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궤반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내외 여론에 환기 시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해외의 조선왕조 의궤 소장처의 관계자들에게 의궤반환 운동에 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본 권고결의안은 의궤반환과 관련된 국내외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수행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하려는 것임.
- 되찾고자 하는 '조선왕조의궤'는 왕실의 주요 의식의 준비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림으로 남긴 문헌으로 왕실 의례의 본보기를 만들고 이를 후대에 전하고자 도감(都監)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으로서 이는 '조선의 기록 정신'을 보여 주는 정수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임.
- 본 권고사항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선왕조의궤전시개최", "조선왕조의궤에 나오는 물품재현",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영상다큐멘터리 제작", "조선왕조 의궤를 활용한 기념품 및 관광상품 제작" 등 임.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조선왕조의궤의 전시회" 개최는 의궤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해외의 의궤 소장처들은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의궤의 반환에는 거부감을 가진 것이 현실이므로 조선왕조 의궤의 전시를 통하여 이들과 소통하여 반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시민들 또한 의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의궤를 되찾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확대될 것이며,
 - 조선왕조의궤에 나오는 물품의 재현은 왕조의 얼이 담긴 전통적인 물품을 재현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고, 가치가 큰 것이나 의궤에 나오는 물건은 모두가 왕실의 행사에 사용되던 물품으로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읽어버린 역사의 일부를 되살리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사료됨.
- 그러나 조선왕조 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의궤에 그려진 당시의 왕실 물건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재료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한계로 인하여 왕실의 물건이 외형적인 모양만으로 재현될 경우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재현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영상다큐멘터리 제작은 전통적인 책자 형식의 기록물인 의궤를 영상다큐멘터리 영상기록물로 제작하는 것은 "조선왕조의궤"의 기록정신을 다른 매체로 살려낸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영원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권고안과 같이 다국어로 제작되어 우리의 의궤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홍보자료

가 될 것임.

- 조선왕조 의궤 및 의궤에 그려진 물품을 활용한 기념품 및 관광상품 제작은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산업과 마케팅을 육성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므로 보다 세밀한 검증과 마케팅 계획으로 우리의 전통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리의 해외유출 문화재는 약 76,143점이나 환수된 문화재는 전체의 10%인 7,466점에 불과하므로 조선왕조의궤의 전시와 행사 등을 통하여 의궤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동 위원회의 의궤반환 활동을 국내외에 홍기시키기 위해서는 본 권고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궤에 나오는 물품의 재현과 관광상품 개발은 동 사업이 조선왕조 물품의 외형적인 모방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충분한 고증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